

「2023년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 모집공고

「2023년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모집 개요

사업목적

-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네트워크·보안솔루션, 메타버스 사무실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

모집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모집규모 : 5,000개사 내외

지원내용 및 방식

- 선정된 수요기업에 비대면 서비스 도입·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원(자부담금 30% 포함) 이내 바우처 지급

-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 이하 '플랫폼')에 등록된 공급기업의 서비스 상품을 선택 후, 결제·이용

□ 서비스 제공 분야

- 중소기업의 원격근무 확산과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및 메타버스 사무실 4개 분야

< 서비스 제공 분야 >

서비스 분야	서비스 개요
① 화상회의	기업 내·외부간 회의, 영상면접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화상회의 서비스
② 재택근무(협업 Tool)	기업 내 임·직원의 재택근무 등에서 활용이 가능한 업무파일 및 화면 공유 등 온라인 협업 클라우드 서비스
③ 네트워크·보안솔루션	해킹 방지 및 정보보안 등을 위한 온라인 보안 서비스
④ 메타버스 사무실 ('23년 신규 추가)	기업 내 임·직원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 환경 및 이용자간 상호 작용이 가능한 교류소통 환경을 가상공간(2D·3D)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2.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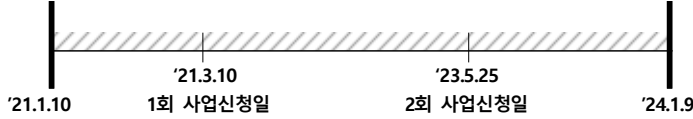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대표자가 같은 다수 기업(법인, 사업체)은 1개 기업만 신청 가능
- '20년부터 '22년까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선정되어 바우처를 지원받은 수요기업은 '23년도에 재신청 불가
- 단, 장애인·여성·소셜벤처기업으로 인증(판별)받은 기업은 최대 2회까지 신청(지원)* 가능

* 최초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신청일부터 '23년 사업신청일까지 모두 인증(판별)기간(확인서 상의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증빙서류 제출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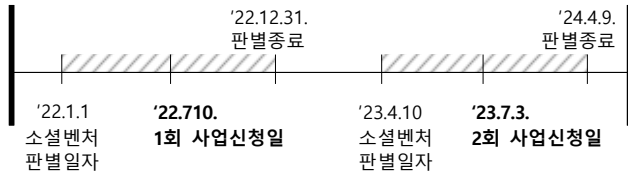
< 장애인·여성기업·소셜벤처기업 지원가능 예시 >

① 장애인·여성기업 확인서 유효기간('21.1.10~'24.1.9)



① 장애인·여성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 동 사업 1회, 2회 신청일 포함하는 경우 ⇨ **신청가능**

② 소셜벤처 판별일자('22.3.10)



② 소셜벤처기업은 사업 신청 당시 소셜벤처 판별기업이어야 2회 지원 가능 ⇨ **신청가능**

* 1회 당시 소셜벤처 판별기업이 아니면 2회 신청 불가능

□ **신청(지원) 제외 대상** :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은 신청(지원) 가능

※ ①, ②의 '예외'에 해당되는 기업은 신청 시, 관련 증빙 필수 제출

③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④ 주된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에 해당하는 기업

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여 제한 기업

⑥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관리지침을 위반한 참여 제한 기업

⑦ 당해연도 비대면 서비스 분야 관련 제품을 지원하는 타 정부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기업(중복지원 불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클라우드서비스 보급·확산사업(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한국인터넷진흥원)

⑧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대표자 포함)

3. 지원내용

< '23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주요 변경사항 >

구분		'22년	'23년
지원분야		▶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보안솔루션	▶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보안솔루션, 메타버스 사무실(신설)
수요기업	지원규모		▶ 5천개사 내외
	바우처	최초1회사용	▶ 선정 후 30일 이내
		전액사용	▶ 선정 후 60일 이내
공급기업	서비스 지원기간	▶ 최대 24개월	▶ 최대 12개월

□ 바우처 지원

- 비대면 서비스 도입·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원 (자부담금 30% 포함) 이내 바우처 지급*

* 바우처를 지급받기 위하여 바우처카드(신한 체크카드) 또는 바우처 상품권(선불 충전식 모바일 상품권) 중 택일하여 발급

-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의 70%(최대 280만원)까지 보조금으로 지원, 나머지 공급가액의 30% 및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부담

< 지원 내용 예시 >

합계 (C=A+B)	공급가액(A)		수요기업 부담 부가가치세(B)
	보조금(정부지원금) 최대금액(70%)	수요기업 부담 최대금액(30%)	
4,400,000원	2,800,000원	1,200,000원	400,000원

* 상기 예시는 바우처 전액 사용을 가정한 금액이며, 1개 공급기업당 최대 결제 가능 금액은 22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비대면 서비스 상품 결제 및 이용

- 수요기업은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개 이상의 상품을 결제를 완료해야 하며, 미결제 시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예정
- 60일 이내에 바우처 전액을 사용(결제)하되, 미결제 바우처에 대한 보조금 환수 예정
- 창업진흥원(이하 전담기관) 및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하 운영기관)은 수요기업의 이용실적을 통해 서비스 이용 여부 확인(결제 후 6개월간)

< 서비스 상품 이용 유의사항 >

- ① 서비스 상품 결제 후 30일 이내에 최소 1회 이상 해당 상품을 이용하여야 하며, 미이용시, 결제 취소 및 보조금 환수
- ② 서비스 이용중, 3개월 연속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바우처 지원이 중단되며 잔여 이용기간을 월할 계산하여 잔여 바우처 환수*
* 지원 중단(환수)시 해당 환수금액은 바우처 재사용이 불가

4. 신청·접수

□ 접수기간

- (1차) 5월 24일(수) 09:00 ~ 6월 8일(목) 18:00 * 6월말 선정기업 발표예정
 - (2차) 7월 3일(월) 09:00 ~ 7월 14일(금) 18:00 * 7월말 선정기업 발표예정
 - (3차) 8월 1일(화) 09:00 ~ 8월 14일(월) 18:00 * 8월말 선정기업 발표예정
- * 예산 소진 시 신청 조기마감 예정으로, 다음 차수 신청이 생략될 수 있으며 마감 시 플랫폼에 게시하여 안내할 예정. 단, 사업포기자 등이 발생한 경우 2,3차 접수가 재개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플랫폼(www.k-voucher.kr)에서 온라인 신청

< 플랫폼 온라인 신청절차 >

- ① 플랫폼 접속 → ② 약관동의 및 본인인증 → ③ 로그인 정보 입력 → ④ 대표자 및 기업정보 입력* → ⑤ 제출서류 업로드 → ⑥ 수요기업 신청서 작성(업무환경 및 서비스 필요성 400자 내외, 서비스 활용계획 400자 내외) → ⑦ 수요기업 참여 신청 → ⑧ 제출하기

* 사업신청 및 본인인증은 기업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소속 직원)에 한하며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수요기업을 신청할 수 없음(공급기업 또는 제3자를 통한 대리신청 및 대리결제 금지)

□ **제출서류** : 아래 서류 플랫폼에 업로드

구분	제출서류(사본 가능)	
필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기업) ·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에 한함)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청렴서약서 · 사업수행 협약서	사업 신청기간 내 작성분에 한함 (별첨 1, 2 참고)
가점 (해당시)	· 고용인원수	필수 제출서류 중 4대보험사업장가입자 명부로 대체
	· 정책우대 ① 벤처기업, ② 이노비즈기업, ③ 메인비즈기업, ④ 강소기업, ⑤ 소부장 강소기업, ⑥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⑦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⑧ 장애인기업, ⑨ 여성기업, ⑩ 소셜벤처기업, ⑪ 가족친화인증기업 ⑫ 창업초기기업(3년)**	사업공고일 기준 유효한 인증서에 한함 (별첨 3 참고)

* 제출서류 누락 및 자료 식별이 불가(본인 확인 불가 등)한 경우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사업공고일 기준 업력(개인:개업연월일, 법인:회사설립연월일) 3년 미만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확인

5. 평가 및 선정

□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단계	수행기관	수행내용
① 요건심사 ▣	운영기관	· 신청자격, 신청(지원)제외 요건 등 확인
② 서면평가 ▣		·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비스 활용계획 평가
③ 최종선정		·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

- (평가절차) 신청기업에서 제출한 서비스 활용계획 및 증빙서류 등을 바탕으로 요건검토, 서류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최종 선정
- 요건심사 : 적격성 항목과 제출서류 적정 여부 등을 가부(可否) 판정하여 서면평가 대상기업으로 선정
- 서면평가 : 지원 필요성, 활용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서면평가 점수에 가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 평가항목 및 배점(안) >

구분	평가 및 가점항목		점수
서면평가 (100)	· 지원 필요성		40점
	· 활용계획의 구체성·적절성		60점
가점* (20)	고용원수	· 2~4인(2점), 5~9인(4점), 10~19인(6점), 20~29인(8점), 30~39인(10점)	최대 10점
	정책우대	· ① 벤처기업, ② 이노비즈기업, ③ 메인비즈기업, ④ 강소기업, ⑤ 소부장 강소기업, ⑥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⑦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⑧ 장애인기업, ⑨ 여성기업, ⑩ 소셜벤처기업, ⑪ 가족친화인증기업 ⑫ 창업초기기업(3년)	최대 10점 (건별 3점)

* 사업공고일 기준 유효한 인증서에 한하며, '고용원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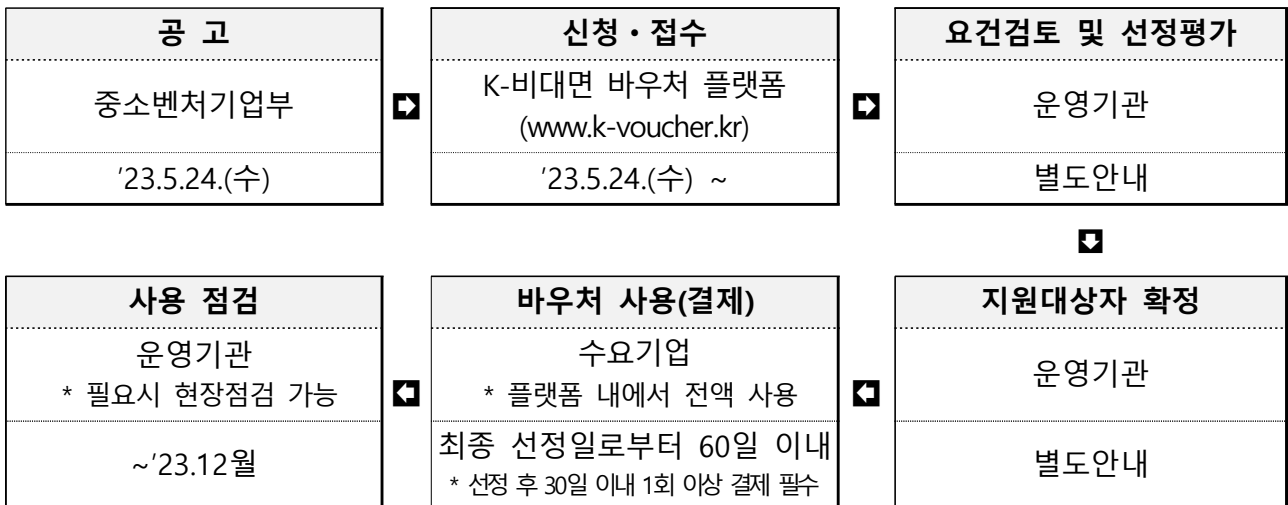
- 최종선정 : 환산 점수 60점 이상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 동점자 발생시에는 접수가 빠른 순으로 바우처 발급

** 중기부 구조혁신지원사업 내 '디지털혁신형 사업전환 컨설팅' 수행기업,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종합컨설팅' 수행기업으로 관련 기관에서 추천한 기업은 서면평가 면제 (단, 요건심사 통과기업에 한함)

6.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 본 사업 신청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②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명단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 되는 경우 해당자 또는 기업을 고발조치 할 수 있습니다.
- ④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기업에게 있습니다.

□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신청기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관리지침 및 공고문 등의 내용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사업 신청은 온라인만 가능하며, 신청기간 내 모든 제출서류(가점서류 포함)를 플랫폼에 업로드해야하고, 신청기간 종료 이후 제출된 서류는 수정 및 반환 불가
- 공고 및 지침 내용 미숙지, 제출자료 누락, 서비스 활용계획서 양식 미준수, 기입내용 오류 등 신청기업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신청기업에게 있음

- 타 기업과 사업 신청서의 유사성 및 중복성, 표절, 도용 등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대표자 본인 또는 소속 실무자가 직접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 공급기업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대리신청 또는 대리결제 하여서는 아니되고, 대리신청 또는 대리결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아울러, 사업에 선정되어 결제수단을 발급받을 시, 기업 대표자 명의의 결제수단 발급을 위하여 대표자의 인증을 필히 받아야 함
- 당해연도에 비대면 서비스 분야 관련 제품을 지원하는 타 정부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클라우드서비스 보급·확산사업,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추후 발견 시 선정 취소, 바우처 환수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평가 관련 유의사항

- 수요기업이 제출한 신청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파악 등을 위해 필요시 현장점검이 추가될 수 있음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포함) 1회에 한하여 가능

□ 선정 후 사업운영 관련 유의사항

- 선정된 수요기업은 1개 공급기업에 최대 220만원까지(부가가치세 포함)만 결제가 가능
- 선정된 수요기업은 서비스 상품 결제 후 30일 이내에 최소 1회 이상 해당 상품을 이용하여야 하며, 미이용할 경우 결제 취소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바우처 결제 후 결제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공급기업과 협의 후 취소가 가능하지만 바우처 지원기간(최종 선정일로부터 60일) 이후로는 결제금액 취소 불가
- 휴·폐업 등으로 최초 선정 당시 기업의 상태가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운영기관과 공급기업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업 상태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요기업에 있음
 - 사업비 환수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상품 잔여 이용기간을 월할 계산하여 사업비가 임의 환수될 수 있음
- 수요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 해당 월까지는 정상 사용으로 간주하고, 다음 월을 기준으로 서비스 상품 잔여 이용기간을 월할 계산하여 환수하여 차순위 기업에 배정
 - * 예시) 12개월(월 10만원)의 서비스 상품을 이용 중인 수요기업이 폐업(5.2)한 경우 5월까지는 정상 사용(10만원x5개월)으로 간주하고, 6월부터 잔여 이용기간을 월할 계산(10만원x7개월)하여 환수
- 수요기업은 공급기업의 서비스 상품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실적(로그인·로그기록) 수집에 협조하여야 함
 - 이를 위해, 수요기업은 공급기업이 로그인·로그기록을 제3자(전담기관, 운영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동의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부정행위 관련 유의사항

- 선정된 수요기업은 공급기업 또는 제3자로부터 서비스 결제의 대가로 금품 등을 수령("페이백")하여서는 아니되며, 금품 등 수령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환수 및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음
 - * (예시) 공급기업 B사는 자사의 서비스 상품을 구매하는 대가로 수요기업에게 고가의 노트북 등의 현물 및 현금을 제공함
-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모의하여 부정하게 바우처(정부지원금)를 지급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규정(사용목적) 외 부정하게 집행할 경우, 부정행위 사안에 따라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 부과,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R&D, 융자 등) 참여 제한, 부정당 사업자 등록 및 형사고발이 진행될 수 있음
- 전담기관과 운영기관은 선정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7. 선정기업의 의무

- 선정기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관리지침, 표준협약서, 서비스 이용·제공 약관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중소기업부, 전담기관,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협약종료 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8. 신청문의

- 문의처** : 바우처 콜센터(1670-1357)

※ 사업신청 및 바우처 사용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플랫폼 (www.k-voucher.kr)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청 령 서 약 서

참 여 기 업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당사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서약합니다.

1. 서비스 결제 대가로 자부담금, 현금 및 현물(노트북, 사은품 등)을 서비스 제공기업 또는 제3자(판매대행 등)에게 수령하지 않을 것
2. 서비스 제공기업 또는 제3자 등을 통해 사업을 대리신청 하거나 바우처를 대리 결제하지 않을 것

○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모의하여 부정하게 바우처(정부지원금)를 수급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규정(사용목적) 외 부정하게 집행할 경우,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 부과, 정부 지원사업(R&D, 융자 등) 참여 제한, 부정당 사업자 등록 및 형사고발 등이 진행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3년 월 일

대표(이사)

(인)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장 귀하

사업 수행 약약서

본인(법인)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2023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 취소 및 사업비 환수 등의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약약합니다.

- ① 서비스 상품 결제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최소 1회 이상 해당 상품을 이용할 것을 약약합니다.
- ② 휴·폐업 등 최초 선정 당시 기업의 상태가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운영기관과 공급기업에 통보할 것을 약약합니다.
- ③ '23년 동 사업에 대표자를 기준으로 1개의 사업자만 참여하고 있음을 약약합니다.
- ④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사업 관리지침, 공고문을 준수할 것을 약약합니다.

2023년 월 일

대표(이사)

(인)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장 귀하

별첨3

정책우대 가점 리스트

□ 해당 증빙서류(확인서, 가입증서 등)를 사업신청 시 플랫폼에 업로드

연번	항목	발급방법
1	벤처기업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벤처확인위원회 심의·의결 →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발급
2	이노비즈기업	이노비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자가진단 → 기보 현장평가를 통한 선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발급
3	메인비즈기업	메인비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자가진단 → 평가기관(기보·신보·한국생산성본부) 현장평가를 통한 선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발급
4	강소기업	온라인 또는 우편(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한 신청 → 결격사유 확인 및 선정 →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발급
5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기술보증기금 사이버영업점(www.kibo.or.kr)을 통한 신청 → 결격사유 확인 및 선정 → 수요기업 신청 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선정서 업로드
6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중진공 지부를 통한 방문신청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발급
7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워크넷 사이트를 통한 참여신청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 신청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발급
8	장애인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서류검토·현장실사를 통한 조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발급
9	여성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서류검토·현장실사를 통한 조사(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발급
10	소셜벤처기업	소셜벤처스퀘어(sv.kibo.or.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자가진단 및 판별신청·판별(기술보증기금) →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발급
11	가족친화인증 기업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사무국 심사·선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발급
12	창업초기기업 (업력 3년미만)	수요기업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업로드 → 운영기관에서 별도 확인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3년미만 확인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설립연월일' 기준 3년미만 확인